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6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및 후속조치 ...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주희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6. 4. 30.

다. 회 부 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

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
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및 후속조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가 해당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정보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며(안 제44조의2제8항 신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유지하되, 삭제 요청을 한 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u>

현행	개정안
	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가 해당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고 즉시 제7항에 따라 요청한 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⑨ 정보게재자가 제8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유지하되, 제7항에 따라 요청한 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제44조의2 0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⑩ 제7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 침해사실의 소명 기준, 제8항에 따른 임시조치 및 삭제의 절차, 제9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u>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u> ② ~ ④ (생략)	<u>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유지·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 ----- ----- -----제44 <u>조의2제7항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의 삭제 요청, 제44조의12제3항의</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하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를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²⁾.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

- 현행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으로 정함.
- 그런데, 현행법은 권리침해정보 삭제 절차상 삭제등 요청의 주체를 “그 침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①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 ② 삭제 요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에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정보”를 추가하며,
 - ③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 ④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를 유지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화된 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직접 소명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온라인상 권리침해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해야 한다.

- 다만, 개정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권리침해정보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대리에 관한 일반원칙³⁾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안 제44조의2제7항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삭제 요청할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미성년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위임장 등 확인을 거친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권리침해정보 삭제가 이뤄지고 있음.
- **둘째**, 안 제44조의2제7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 외에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정보”를 삭제 요청의 대상에 추가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삭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가 이에 해당하여 임시조치 및 삭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

3)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삭제 요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구(舊)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에 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⁴⁾.

- 셋째, 현행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임시조치 없이 바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가 가능한데 안 제44조의2제8항은 임시조치를 거친 후에만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현행법보다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넷째, 현행법 제44조의2제4항은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4조의2제9항은 임시조치 이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임시조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종료기간도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시조치가 장기간 유지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44조의2제4항이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①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② 권리침해 여부에

4)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다툼이 있더라도 우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삭제를 요청한 자를 보호한 후 후속 절차로 나아가도록 하는 임시조치의 임시적·단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비교적 짧고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임시조치가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면서도, 정보 접근 차단 기간이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충족의 근거로 들어 합헌으로 판단한바, 임시조치의 유지 기간 또한 단순한 절차적 사항이라기보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와 임시조치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음⁵⁾..
- 따라서, 안 제44조의2제9항과 같이 임시조치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임시조치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다섯째, 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7월 7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2020. 11. 26. 2016헌마275·606, 2019헌마199(병합)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수정수용

-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권 명확화와 임시조치 후 후속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정보’는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적용 범위 및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수정이 필요함.
- 그 외에, 미성년자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후 이의제기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동의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현행법으로도 아동·청소년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 참고로,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 25-26)에 근거해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 중임.

6) 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현재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고,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정보’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삭제요청권 명확화는 타당하나, 임시조치 대상 정보 확대 및 해당 정보 삭제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있음.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미성년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절차 및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개정안은 중복 입법에 해당할 수 있고,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228